

# 2025년도 중앙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(위법성검토요원) 모집 안내문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과에서는 국내·외 인터넷홈페이지, SNS 등에서의 사이버선거범죄 예방·안내·단속활동을 담당할 사명감 있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## 1. 채용인원 및 근무기간

가. 채용인원 : 4인

나. 근무기간 : 2025. 4. 21.(월) ~ 6. 13.(금)

## 2. 담당업무 : 사이버상 위법 의심게시물에 대한 위법성 검토(법률전문인력)

## 3. 근무처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(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)

## 4. 지원자격 : 법학전공 학위 소지자 또는 휴학 중인 자

-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터넷 검색이 자유롭고 사이버선거범죄 예방·단속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춘 자
  - ☞ SNS·커뮤니티 계정을 보유하고 있고 장시간 유튜브 시청이 가능한 자
- 정당의 당원이 아니고, 정당·후보자와 연고관계가 없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·직원과 연고관계가 없는 자
- 「국가공무원법 제33조」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<p>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피성년후견인</li> <li>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</li> <li>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li> <li>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li> <li>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</li> <li>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</li> <li>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li> <li>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li> </ol>
---

<p>나지 아니한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</li> <li>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</li> <li>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</li> <li>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</li> <li>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</li> <li>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li> <li>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li> </ol>
---

## ○ 가점 사항

구분		부가 점수
법정 가점	「국가유공자법」 제29조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~10%
사회 형평 가점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 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자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	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%

- ※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,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(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).
- 또한,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%를 초과할 수 없음.
- ※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. 단,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.

## 5. 서류접수

가. 접수기간: 2024. 4. 10. ~ 4. 13.(4일간)

나. 제출방법: 이메일(cyber6516@nec.go.kr)로 제출

### 다. 제출서류

- 공통서류: 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별첨 양식) 각 1부  
법학대학 졸업(예정)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1부

**6. 선발방법:** (1차) 서류심사 → (2차) 1차합격자 면접심사

가. (1차) 서류심사: 2025. 4. 16.(수)까지 (적격자 중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)

☞ 합격자에 면접일시 등 개별 통지

나. (2차) 면접심사: 2025. 4. 17.(목)예정 (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)

☞ 면접 일정은 서류심사 합격 인원 및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**7. 합격자 발표: 2025. 4. 18.(금)**

※ 면접 응시자에 합격 여부 문자 통지 및 위원회 홈페이지 공고

※ 합격자 발표 이후 허위 경력, 정당가입사실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 
합격 취소

※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후 중도 퇴사 등을  
대비하여 예비합격자 별도 선정

**8. 대우 및 근무조건 등**

가. 1일 수당(식대 포함) : 130,860원

나. 근무시간

1일 8시간 (상근, 식사시간 1시간 제외),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

※ 필요시 새벽·야간·휴일·주말 근무 또는 오전·오후 교대근무할 수 있음.

※ 교대근무로 1일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은  
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.

다. 해촉사유

선발된 자가 법규위반 또는 업무 수행시 불공정한 행위 등 「공직선거  
관리규칙」 제2조의3 제7항에 해당하는 때

라. 기타 문의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과(☎ 02-3294-8546,8544)

2025. 4. .

**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**